

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와 같은 법 제66조의 2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설립 목적, 센터의 위치(안 제1조, 제2조)
- 센터의 기능(안 제3조)

- 관리·운영의 위탁, 예산의 지원(안 제4조, 제5조)
- 위탁의 취소, 지도·점검(안 제6조,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난·안전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해당 기구의 목적, 기능, 관리·운영의 위탁,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 정책을 연구, 개발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며, 이를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광역시도의 재난 대응조직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7일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이 개정(재난안전 실·국 추가)되어 충청북도도 재난안전 조직을 상반기 중에 조정할 계획임. 따라서 향후 조정되는 재난대응 실·국의 기능 및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및 역할과 센터의 인력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